

신용카드 설명서

- ◈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mark>반드시</mark>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o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여야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 o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매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와는 사용 가능가맹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 가능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구매 후결제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결제 이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 민원 ·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O1. 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mark>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mark>을 하여야 합니다. <u>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u> 분실하는 경우, <u>부정사용된 금액에</u>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Q2. 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는 어떻게 반환받나요?
 - → <u>연회비</u>는 <u>카드발급 시점</u>을 기준으로 <u>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u>됩니다.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u>카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u>를 계산하여 <u>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u>하여 드립니다. 다만, <u>카드발급 및 부가</u> <u>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u>됩니다.
- Q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지난 달 이월금액 50만원, 이번 달 30만원(일시불) 이용시 약정결제비율(50%), 수수료율(연 17%)로 가정했을 때 청구되는 금액은 총 406,986원(① + ②)이며, 다음 달로 이월되는 잔액은 40만원(③)입니다.

- ① 리볼빙 수수료 : 6,986원(전월 잔액(50만원) × 수수료율(17%) × 30일/365일)
- ② 청구되는 원금: 40만원([50만원(이월금액) + 30만원(당월 이용액)] × 50%
- ③ 이월잔액: 40만원(80만원(이월금액+당월 이용액) 40만원(청구원금))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 Q.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 <u>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mark>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mark>되며, <u>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u> <u>하락</u>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 Q.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 당행고객센터 또는 카드사업부(1566-5050)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시에는 **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의 특성

- □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해야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 □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카드 표면에 표시됩니다. 유효 기간이 도래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하며,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갱신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용대금 상환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 여부

□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 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가상계 좌(대금결제를 위해 카드사가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계좌) 입금 등) 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구 분 주요내용	
일시불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결제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연16% ~ 연19%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은행이 미리 부여한 한도(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최대 40%)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 ※ 이용 후최초로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의무발생	연5.5% ~ 연18.9%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연5.5% ~ 연18.9%

□ 금리의 변동 여부

회원이 할부결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리볼빙) 이용 시 이용개월,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3. 수수료율

- □ 해외서비스 수수료 :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0.25%
 - (거래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 국제브랜드 수수료 :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 ㅇ 수수료율 : MASTER 1.0%, VISA 1.1%, AME 1.4%
 - (거래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4.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화

□ 연회비 : 연회비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구	분	청구단위	연회비	
기본연회비 제휴연회비		회원별/카드별	신용카드 상품별로 상이	
		카드별	(해당 상품의 연회비는 설명서 내「상품별 설명서」 참고)	

- □ 연회비 청구: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 (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발급(신규발급에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예시) 연회비 2만원, 반환금액 산정 제외비용 1만원, 연회비 부과대상일수 200일, 잔여일수 20일인 경우 반환되는 연회비
☞ 반환되는 연회비 = (2만원 – 1만원) × 20일/200일 = 1,000원

□ 연회비 반환기한 :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5. 계약 해지 시 불이익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

-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가맹점
 - 1. 카지노
 - 2. 경마, 경정, 경륜장
 - 3. 복권방, 해외가상화폐거래소 등

7.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발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에는 신용카드거래 [신용카드발급,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가계여신거래[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등이 있습니다.
-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 공여보다 개인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 본 신용카드 상품의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상세내용 및 제공 조건은 '상품별 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 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 □ 카드 이용대금 연체시 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의 연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로 적용)
- □ 다만, 연체 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정상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거래 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정상이자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 금리(신규대출 기준)

□ 연체에 따른 불이익

o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및 지연 배상금 발생, 카드이용 정지, 카드이용 한도감액, 카드이용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o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ㅇ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u>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등에서 정한</u> 사유)

o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

1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위험성 및 예시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

(예시)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5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일시불 30만원, 약정결제비율: 50%, 최소결제비율: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17%,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30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10만원

구 분	계산방법	금액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 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 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 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의 약정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 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 금액) ×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10% = 8만원
리볼빙 수수료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 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 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 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 17%× 30일/365 = 6,986원
리볼빙 약정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 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 금액) × 약정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50% = 40만원

※ 당월에 결제해야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6,986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6,986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약정체결 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2. 위법계약해지권

- □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 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o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o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o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3.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mbank.co.kr), 고객센터(1566-5050)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14. 자료열람요구권

-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계약체결에 관한 자료,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은행은 고객의 분쟁 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안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한 일자를 알려 드립니다.
- □ 은행은 법령,제3자의 이익 침해,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5.신용카드 해지 신청 안내

- □ **해지 신청**: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은행앱,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 제외)
 - o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 카드 > BC카드 소개/신청/해지 > BC카드 해지
 - o 모바일앱뱅킹(iM뱅크 앱): 앱 접속 >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상품 관리 > BC카드 카드정보 > 카드해지
 - [고객센터]: 1566-5050(대표번호) > ARS 5번 신용카드 업무 > ARS 6번 사용등록 및 발급 신청, 해지 > ARS 3번 신용카드 해지
 ☞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은 9시~18시까지 가능
- □ 해지 처리 : 신용카드 해지로 인해 탈회가 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 납부, 포인트 소멸 및 환급처리 안내 등을 위해 상담 직원과 통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66-5050 > ARS 0번) > ARS 3번 상담원 연결)





16.개인신용평가대응권 (개인회원에 관련된 설명)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 · 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 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 · 삭제 ㅇ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재산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ㅇ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6조의 2)를 말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 자동화평가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ㅇ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ㅇ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에 따라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임을 확인하셨습니가? □ 대상 □ 비대상 ㅇ 채무자인 고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예 : 인터넷뱅킹, 앱,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횟수제한 없음) ㅇ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를 보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금융거래가 제약되며 신용점수 등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 드리나,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며, 은행은 회원의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셨

습니까?(개인회원에 관련된 설명)

② 아니오

① 예